

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개정이유

-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정비
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 →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(안 제12조제2항제1호)
 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(안 제15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단 → 다만, 보궐위원 → 새로 위촉된 위원, 아니한 → 았은, 아니하다고 → 았다고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